

업무구분	단위업무	1.7 전임직교원 복무 - 교원 창업 및 창업에 따른 겸직근무(강의면제)		
교원인사	작성일자	2021.9.	연락처	2491

1. 업무개요

- 가. 업무내용 : 공과대학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주요 업무 중 교원의 창업에 관한 활동을 승인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업무
- 나. 발생시기 : 년중
- 다. 관련근거 : 인사규정 제27조의 2(산학기술협력 등),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, 창업규정

2. 업무처리절차



3. 업무처리내용

- 1) 교직원창업 승인 신청의 자격에 따라 창업 신청 및 창업심의위원회 심의
 - 과학기술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혹은 3년 미만의 근속 교직원으로 창업 시 과학기술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
- 2) 창업심의 결과
 - 창업원 창업심의 진행 및 결과 통보
- 3) 학과 및 공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겸직(강의면제) 심의
 - 창업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(재심을 통해 1회 3년 연장 가능),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시 2년 이내로 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.
 -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, 휴직하는 교원은 학과(부)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,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.
 - 창업 겸직 교직원에게는 급여규정 및 연봉제시행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정액급 연동항목도 이에 준함.
- 4) 공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결과 통보
- 5) 총장 승인 및 관련부서 안내

4. 관련 규정

- 가. 인사규정 제27조의 2
- 나.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
- 다. 창업규정

5. 활용서식

- 가. 교직원창업 승인 신청서, 서약서
- 나. 교직원창업 사업계획서
- 다. 교원 겸직근무 신청서
- 라. 창업겸직 강의면제 신청서/창업 활동 계획서

6. 기타 주요 참고사항

- 창업의 정의
 - “교직원창업”이라 함은 교직원이 재직 또는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(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)을 활용하여 다음 각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근무 이전의 창업기업이라도 다음 각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, 창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직원창업으로 적용
 - 본인이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 등 임원(사외이사, 비상근 등기이사, 감사 제외)에 취임하는 경우
 - 본인 또는 제3자가 설립하는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0% 이상 소유하는 경우
- 창업신청의 자격
 - 과학기술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
 - 3년 미만의 근속 교직원으로서 창업 시 과학기술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
 - 과학기술원 임용 전 창업자가 임용 후 창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

• 창업 겸직근무 시 보수

구분	보수
강의면제 신청	겸직 1년차는 정액급의 100%, 2년차와 3년차는 정액급의 70%, 4년차부터 정액급의 50% 지급
강의면제 미신청	겸직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정액급의 100%, 4년차와 5년차는 정액급의 70%, 6년차부터 정액급의 50% 지급

- 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
 - 겸직허용기간은 최초 신청 시 2년이내, 재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
 - 휴직허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(총 6년 이내)
- 교직원창업자의 복무
 -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, 휴직하는 교원은 학과(부)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강의(휴직의 경우 제외),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제한을 받음.
 -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음.
 - 교직원은 2개 기업 이내에서 동시에 창업겸직을 할 수 있으며, 두 번째 창업기업 근무에 따른 겸직급여 등 겸직조건은 최초 설립한 창업기업의 겸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